2017년 거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거제시 재정공시 2017. 2. 28.

거제시장

- ◆ 우리 시(도)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40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10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904억원)보다 3,49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8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은 3,41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원입니다.
- ◆ 우리 시(도)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7.87 %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06%입니다.
- ◆ 우리 시(도)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조선업 불황에 따라 세입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 지예산 및 사회간접자본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 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재원 확충과 예산절감 등 의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전재원의 확충 노력도 병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거제시 재정공시 바로가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박종호(055-639-4127)

🚺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억원, %)

v1	٥.٠١	-1 -1				거제시		유사 지	방자치단	체 평균
재정	운영	결과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세	입	예	산	6,406	6,815	△410	9,904	9,473	431
	세	출	예	산	6,406	6,815	△410	9,904	9,473	431
예산규모	중 재	기 정	지 계	방 획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ス 재	역 정	통 통	합 계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재경	성자립도	[당초여	계산]	37.87 (32.4)	41.53 (34.26)	△3.66 (△1.86)	37.10 (32.53)	36.93 (31.62)	0.17 (0.91)
재정여건	재경	성자립도	[최종	계산]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재경	성자주도	[당초여	계산]	65.06 (59.59)	64.66 (57.39)	0.4 (2.2)	64.56 (59.99)	63.81 (58.50)	0.75 (1.49)
	재경	성자주도	[최종여	계산]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통합	l재정수	제[당초	예산]	60	66	△6	136	149	△13
	통합	l재정수	제[최종	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정	인 7	이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주	민 참	वं वं] 산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성	과 기	회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재 개	정 운 <i>오</i>	}_	서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재정운용계획	아	산 편 성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반영	통교부서 명현황(서	출효=	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지 감	방 <u>고</u>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방 <u>고</u> 센 티	•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②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거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0,575	549,683	55,540	13,450	21,90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25,083	630,948	652,644	681,538	640,5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vii ∧ì ⊸ii ∧ì	201	13	201	2014		15	201	l6	2017	
세입재원	금액	비중								
합 계	441,398	100	530,938	100	555,225	100	573,572	100	549,683	100
지 방 세	150,523	34.10	163,987	30.89	170,037	30.62	170,000	29.64	158,659	28.86
세외수입	49,090	11.12	26,515	4.99	18,876	3.40	26,494	4.62	19,453	3.54
지방교부세	73,047	16.55	73,888	13.92	91,747	16.52	89,700	15.64	99,400	18.08
조정교부금 등	28,800	6.52	31,000	5.84	42,987	7.74	43,000	7.50	50,068	9.11
보조금	139,938	31.70	190,816	35.94	189,984	34.22	202,696	35.34	192,063	34.94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44,732	8.43	41,595	7.49	41,682	7.27	30,040	5.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거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0,575	549,683	55,540	13,450	21,90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25,083	630,948	652,644	681,538	640,5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川之	ነ [‡] ለት		201	3	201	4	201	5	201	6	201	7
	세출분야			금액	비중								
	합	계		441,398	100	530,938	100	555,225	100	573,572	100	549,683	100
일	반 공	공 행	정	44,317	10.04	48,364	9.11	54,300	9.78	49,859	8.69	39,463	7.18
공	공질서	및 인	·전	13,790	3.12	10,669	2.01	9,280	1.67	11,232	1.96	8,564	1.56
교			육	9,652	2.19	12,760	2.40	6,254	1.13	9,477	1.65	11,359	2.07
문	화 !	및 관	광	23,704	5.37	27,723	5.22	24,581	4.43	27,375	4.77	29,084	5.29
환	경	보	호	44,821	10.15	47,570	8.96	57,470	10.35	60,917	10.62	46,634	8.48
사	회	복	지	93,423	21.17	134,834	25.40	143,113	25.78	154,282	26.90	162,645	29.59
보			건	7,265	1.65	8,064	1.52	10,025	1.81	9,897	1.73	9,764	1.78
농	림 해	양 수	산	69,236	15.69	74,154	13.97	75,831	13.66	75,635	13.19	67,212	12.23
산	업·충	중소기	업	9,483	2.15	13,250	2.50	4,758	0.86	4,296	0.75	5,140	0.94
수	송]	및 교	통	29,452	6.67	43,827	8.25	55,507	10.00	45,394	7.91	52,347	9.52
국	로 및	지역기	발	20,085	4.55	26,610	5.01	23,073	4.16	32,813	5.72	21,010	3.82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1	1]	비	5,289	1.20	5,889	1.11	8,978	1.62	6,600	1.15	9,863	1.79
기			타	70,881	16.06	77,224	14.54	82,055	14.78	85,796	14.96	86,597	15.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25,433	735,164	738,045	750,306	765,460	3,714,408	1.40%
7	아 >	세 수	이	215,417	218,239	222,448	226,127	230,699	1,112,930	1.70%
)] 경	전 수	山〇	420,760	428,887	436,681	446,644	455,117	2,188,089	2.00%
7	रो	방	채	14,000	11,160	0	0	0	25,160	-20.30%
		수입 ∦부거	-	75,256	76,878	78,917	77,534	79,644	388,229	1.40%
세			斊	<i>7</i> 25 <i>,</i> 433	735,164	738,045	750,306	765,460	3,714,408	1.40%
7	경 /	상 지	출	142,971	141,021	144,876	156,503	161,582	746,953	3.10%
	\}	업 수	分	582,462	594,144	593,169	593,803	603,877	2,967,455	0.9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중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17,701	679,223	△38,478	△5.36
거제시	681,538	640,575	△40,963	△6.01
교육청	0	0	0	0
공사·공단	22,192	24,355	2,163	9.75
출자·출연기관	13,971	14,293	322	2.3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 출자출연기관(2개): 거제문화예술재단,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1014001&cpath=)

🚯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거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7.87%입니다.

(단위: 백만원, %)

재정자립도	세입 합계	자체세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B <i>J</i> A)	(A=B+C+D+E)	(B)	(C)	(D)	및 내부거래(E)
37.87 (32.4)	549,683 (549,683)	208,153 (178,112)	341,531	0	0 (30,04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거제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37.46%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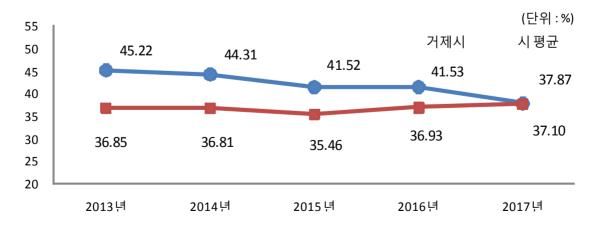
재정자립도	세입 합계	자체세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B <i>J</i> A)	(A=B+C+D+E)	(B)	(C)	(D)	및 내부거래(E)
37.46 (30.81)	651,540 (651,540)	244,042 (200,711)	399,697	7,800	0 (43,331)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5.22%	44.31%	41.52 (34.02)	41.53 (34.26)	37.87 (32.4)
최종예산	44.98%	44.38%	43.21 (37.06)	37.46 (30.8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거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06%입니다.

(단위: 백만원, %)

재정자주도	세입 합계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B <i>J</i> A)	(A=B+C+D+E)	(B)	(C)	(D)	및 내부거래(E)
65.06 (59.59)	549,683 (549,683)	357,621 (327,580)	192,063	0	0 (30,04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거제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2.15%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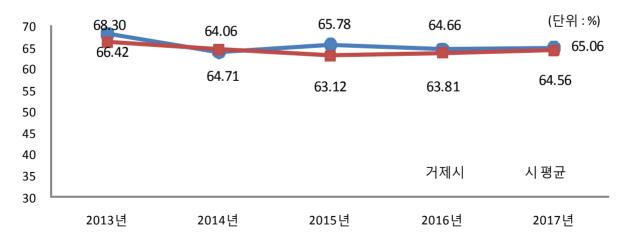
재정자주도	세입 합계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B <i>J</i> A)	(A=B+C+D+E)	(B)	(C)	(D)	및 내부거래(E)
62.15 (55.5)	651,540 (651,540)	404,964 (361,633)	238,776	7,800	0 (43,331)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11 . 7.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8.3	64.06	65.78 (58.29)	64.66 (57.39)	65.06 (59.59)
최종예산	65.58	65.27	64.55 (58.4)	62.15 (55.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거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백만원)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통합재정	통합재정
회계별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규모	수지 1 H=A-(B+E)	수지 2 I=A-(B+E) +F
총 계	583,778	596,095	0	4,970	4,970	23,265	601,065	△ 17,287	5,978
일반회계	529,903	525,510	0	4,870	4,870	16,032	530,380	△476	15,555
기타 특별회계	10,255	13,350	0	0	0	1,908	13,350	△3,096	△1,188
공기업 특별회계	43,087	55,540	0	0	0	5,325	55,540	△12,454	△7,129
기 금	534	1,695	0	100	100	0	1,795	△1,261	△1,261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7,728	△34,599	△28,815	△29,354	△17,287
통합재정수지 2	5,157	2,915	7,052	6,638	5,978

2017년 당초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 1은 전년대비 적자 폭은 줄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기폭에 비해 지출증가폭이 크므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건전재정운용노력이 필요합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거제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백만원)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통합재정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회계별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규모	수지 1 H=A-(B+E)	
총 계	668,658	694,110	9,800	17,870	8,070	25,262	702,180	△33,522	△8,261
일반회계	610,303	603,943	7,800	17,770	9,970	16,078	613,913	△3,610	12,468
기타 특별회계	11,615	16,504	2,000	0	△2,000	1,840	14,504	△2,889	△1,049
공기업 특별회계	45,693	69,167	0	0	0	7,344	69,167	△23,474	△16,130
기 금	1,046	4,496	0	100	100	0	4,596	△3,550	△3,550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1	△20,687	△36,881	△23,844	△31,443	△33,522
통합재정수지 2	6,414	894	1,433	4,766	△8,261

□ 2016년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 1은 전년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폭에 비해 지출증가 폭이 크므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2는 지출은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적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제 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개,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0	57,282
여성정책추진사업	19	37,0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1	20,26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거제시 성인지예산 바로가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거제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40,575	1,343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위 원 회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343	
회계과	고현동주민센터 주차장 재정비 공사	25	신규사업
교육체육과	연사마을 체육시설 정비사업	30	"
산림녹지과	와현마을 입구 조경공사	20	"
산림녹지과	양지암 등산로 정비공사	30	"
산림녹지과	명품마을 가꾸기	30	"
산림녹지과	삼성명가타운 옆 어린이공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10	"
교통행정과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 차선도색	20	"
교통행정과	용산마을 버스대기소 설치공사	20	"
안전총괄과	옥포동 급경사지 안전휀스 설치	15	"
안전총괄과	신촌사거리 방범용 cctv 설치	20	"
도로과	공령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15	"
도로과	하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25	"
도로과	율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30	"
도로과	쌍근마을 아스콘 포장	30	"
도로과	대포마을 도로 재포장공사	30	"
도로과	옥산마을 안길포장	30	"
도로과	하둔마을 안길 석축 정비공사	30	"
도로과	아사2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3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로과	상서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	"
도로과	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30	"
도로과	실전 농경지 진입로 확포장	30	"
도로과	야부마을 안길 확장 공사	30	"
도로과	서대마을 위험구간 안전휀스 설치공사	15	"
도로과	이수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도로과	구영마을 도로측구 정비공사	25	"
도로과	정골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도로과	장승포동 마을안길 계단 정비공사	20	"
도로과	장승포 관내 볼라드 정비공사	10	"
도로과	관내 노후 보안등 도장공사	30	"
도로과	1통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로과	4통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로과	현진에버빌 인근 도로부지 정비사업	30	"
도로과	옥포아파트 앞 보도 정비공사	30	"
도로과	옥포1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
도로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인도 정비공사	25	"
도로과	소로2-80호선 보도 신설공사	10	"
도로과	장평우체국 앞 보도 정비공사	30	"
도로과	중곡동 배수로 공사	25	"
도로과	중곡초등학교 앞 가로등 설치공사	1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로과	주작골 배수관로 설치공사	25	"
도로과	제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8	"
도로과	양정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17	"
농업정책과	신촌마을 용배수로 마무리 공사	30	"
농업정책과	부춘마을 농로 확장공사	30	"
농업정책과	가배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농업정책과	저구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산전마을 구거 정비	30	"
농업정책과	소랑마을 구거 정비	23	"
농업정책과	오량마을 저수지 아래 외 1개소 농로 포장	30	"
농업정책과	소오비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덕곡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동리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25	"
농업정책과	장곶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
농업정책과	매동마을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공사	2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u>거제시 주민참여 예산 바로가기</u>)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제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성과계획		예산액				
실국명	전략 정책사		업목표	다이지어스	الم إدرائي	전년도	비교
	목표수	개수	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예산액	증감
계	12	81	199	182	563,134	578,610	△ 15,47 6
의회사무국	1	1	2	1	1,294	1,391	△97
기획예산 담당관	1	1	3	3	30,193	28,996	1,197
감사법무 담당관	1	1	2	2	295	313	△18
시민고충처 리담당관	1	3	6	3	179	176	3
국가산단 추진단	1	6	14	7	8,974	9,609	△635
행정국	1	11	28	25	102,875	98,688	4,187
주민생활국	1	19	54	41	186,513	178,545	7,968
해양관광국	1	10	30	24	63,626	74,740	△11,114
안전도시국	1	15	29	28	84,928	84,832	96
보건소	1	2	6	11	10,053	10,254	△202
농업기술 센터	1	4	9	24	25,329	26,948	△1,619
환경사업소	1	8	16	13	43,269	58,129	△14,860
읍면동	0	0	0	0	5,605	5,988	△383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1014001&cpath=)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7.87	65.06	29.59	29.14	50.5	35.81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1014001&cpath=)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단체장	79	79	0
업무추진비	부단체장	56	56	0
	추진 추진비	342	342	0
	의정운영 공통경비	86	86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0
	의원국외여비	52	52	0
지방보조금		19,502	8,285	△11,21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53	1,35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51	1,787	236
공무원 일·숙직비		278	278	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기준액) : 시 가군
 - 편성액
 - 시장 : 79,200천원

- 부시장 : 56,100천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편성기준(기준액) : 경남도가 일정 공식(기초기준액+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에 의해 산정하여 한도액 결정 통보
 - 편성액
 - 342,000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편성기준(기준액) : 의원1인당 4,800천원(예결특위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 편성액
 - 기본 : 16명 * 4,800천원 = 76,800천원
 - 예결특위 : 9명 * 1,000 = 9,000천원
- 의정운영업무추진비
 - 편성기준(기준액) : 경상남도 기준경비에 따름
 - 편성액
 - 의장 월2,310천원 * 1명 * 12 = 27,720천원
 - 부의장 월1,150 * 1명 * 12 = 13,800천원
 - 상임위원장 월750천원 * 3명 * 12 = 27,000천원
 - 예결특위 위원장 월750천원 * 1명 * 4 = 3,000천원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 편성기준(기준액) : 2,000천원 * 의원정수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500천원)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국가 공식행사, 국제행사, 자매결연 방문 시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편성액(우리시 의원 1인당 2,500천원 통일 반영)
 - 기본 : 2,500천원 * 16명 = 40,000천원
 - 자매결연 도시 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 : 40,000천원 * 30% = 12,000천원
- 지방보조금
 -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 편성
 - 2017년 한도액 : 19,502[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
-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 통 리장
 - 기본 : 월 200천원 이내
 - 상여금 : 연 200%
 - 회의참석수당 : 1회당 20천원(월2회)

- 반장
 - 수당 : 연 5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운영방식 :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기준(1인당 평균 1,018천원 이내)에서 2016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금액을 적용 편성
 - 기준액 : 1,550,596천원(복지포인트, 단체보험)
- 공무원 일·숙직비
 - 기준액
 - 일직수당 : 60천원*13명*118일 = 92,040천원
 - 숙직수당(평일) : 50천원*9명*248일 = 111,600천원
 - 숙직수당(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 60천원*9명*118일 = 63,720천원
 - 재택근무 : 30천원*1명*365 = 10,950천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E 884	2016년	2017년	
계	4,595	732	
인건비 절감	169	428	
지방의회경비 절감	31	10	
업무추진비 절감	18	1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31	△65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525	292	
지방청사 관리 · 운영	1,226	94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205	△299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한 경상국	2016년	2017년	
계	△3,971	△8,7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675	△554	
지방세 체납액 축소	△3,689	△7,157	
경상세외수입 확충	325	24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64	△581	
탄력세율 적용	△618	△66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거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거제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중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